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에서 “덕의무” 개념의 연역

강지영
(서울대 철학과)

1. 칸트 윤리학에서 행위의 목적에 대한 고려: ‘공허한 형식주의’?

칸트의 윤리학에서 도덕의 최상원리는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정식화된다¹⁾. 정언명령은 보편 법칙의 형식을 가진 준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명령하며 개별 행위에서 행위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도덕의 최상원리를 보편법칙의 형식만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칸트의 윤리학은 '공허한 형식주의'라는 비판을 받았고, 정언명령은 개별적이고 가변적인 행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절한 지침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1) 『윤리형이상학정초』에는 정언명령에 대한 상이한 정식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정식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연구에 따르면 정언명령의 정식들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참고 Paton 1962: p. 152 이하): 보편법칙의 정식(GMS IV: 421), 자연법칙의 정식(“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GMS IV: 421)), 목적 자체인 인간성의 정식(“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우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GMS IV: 429)), 자율의 정식(GMS IV: 434), 목적의 왕국의 정식(“한낱 가능한 목적들의 나라를 위한 보편적으로 법칙수립하는 성원의 준칙들에 따라 행동하라.” (GMS IV: 439)). 연구자들 간에 정언명령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논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 법칙의 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 준칙이 보편법칙이 되기를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라.”(GMS IV: 421).

그런데 '공허한 형식주의' 비판에 맞서 우리는 정언명령이 행위의 목적을 도외시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정언명령의 정칙들 가운데 하나인 “목적 자체인 인간성의 정칙”(GMS IV: 429)²⁾은 도덕 법칙을 근거지을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규명하면서 세워진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정언명령도 행위할 때 따를 법칙인 이상 어떤 목적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도덕법칙의 근거에 놓여있을 수 있는 목적은 “그 현존재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따라서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예외없이 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목적은 “목적 자체인 인간성”이며, “목적 자체인 인간성의 정칙”은 이성적 존재자들이 도덕적 행위에서 고려할 목적을 형식화한다.

그런데 정언명령의 정칙들 가운데 하나에 이미 목적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공허한 형식주의' 비판에 맞서는 데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인 인간성”이라는 목적은 개별 행위에서 따라야 할 구체적인 목적이 아니라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세울 때 개별적인 목적들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소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허한 형식주의”라는 비판에 맞서 칸트의 정언명령을 내용적으로 규정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칸트의 저술들에는 목적 개념을 구체적인 의무들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윤리형이상학정초』(이하 『정초』)에서 칸트는 행위

2) 본문에서 칸트의 원전은 약호로 제시하며, 베를린 학술원판의 칸트 전집(Gesammelte Schriften, herausgegeben von der 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erlin 1900ff.)의 권수를 숫자로 표기한 뒤 페이지 수를 기재한다. 본 논문에서 언급된 칸트 원전의 약호는 아래와 같으며 본문 인용은 『아카넷 한국어 칸트 전집』을 참조한다.

GMS: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국역본: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정초』, 아카넷, 2005)

KpV: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국역본: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실천 이성비판』, 아카넷, 2003).

MS: Metaphysik der Sitten(국역본: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012).

자의 주관적인 준칙이 “목적 자체인 인간성”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봄으로써 “불완전한 의무” 개념을 도출한다. 또한 『윤리형이상학』의 『덕론』에서 칸트는 덕의 개념을 규명하고, 덕 의무를 “그것을 가지는 것이 동시에 의무인 목적”으로 규정한 뒤 왜 이 개념이 윤리학에 도입되어야 했는지 논증한다. 만약 우리가 덕 의무가 무엇이며 덕 의무, 즉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어떤 이유에서 칸트 윤리학에 고려되어야만 하는지 성공적으로 밝힌다면, ‘공허한 형식주의’ 비판에 맞서 정언명령이 행위를 이끄는 데 유효한 원리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윤리형이상학』에 제시된 논증들을 검토하면서 어떠한 이유에서 “가져야만 하는 목적”(덕 의무)이 칸트 윤리학에 도입되어야 했는지에 대답하고자 한다. 『윤리형이상학』에서 칸트는 덕 의무를 윤리학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네 개의 논증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MS VI: 381, 385, 388, 395). 칸트의 논증을 분석하면서 필자는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왜 칸트의 윤리학에서 고려되어야 했는지 밝히고, 덕 의무의 요구가 이성적 행위자의 목적 수립 능력을 개별주체의 측면 뿐만 아니라 상호주관적 측면에서 보존하고 촉진시키라는 것에 다름아님을 보이고자 한다. 나아가 “가져야만 하는 목적” 개념이 칸트 윤리학의 형식주의적 측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언명령을 내용의 측면에서 규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2.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란 개념을 윤리학에 도입할 필요성

도덕의 최상원리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그 규정을 정당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정초』와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준칙의 보편법칙적 형식에 주목한다. 반면 『윤리형이상학』에서는 모든 행동이 목적을 가진다는 행위이론적 전제 하에서 도덕적 행위의 목적이 검토된다. 그런데 권리와 법이 문제되는 영역을 다루는 『법론』에서는 어떤 목적이 “보편 법칙에 따라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와 공존하는지”(MS VI: 231)만이 문제된다. 따라서 법론에서는 형식적인 목적 개념만이 고

려되며, 개별 행위자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이지 않는다. 그러나 윤리학에서는 그저 형식적인 목적 개념을 고려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세워야 하는지 언명하는 법칙이 있어야 한다. 윤리학에서 목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칸트의 논증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덕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의의 강력함”(MS VI: 390)을 뜻하는데, 인간은 본성적 자질에 의해 의무에 반하도록 행동하도록 쉬이 이끌린다. 따라서 덕이 문제되는 맥락에서는 인간이 이 본성적 자질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되고, 그 결과 도덕법칙이 요구하는 바인 준칙이 객관적 법칙의 형식을 갖는 것 이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의욕은 준칙을 선택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목적을 세우는 측면도 포함하므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면 어떤 목적을 세워야만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목적을 세울 경우 도덕법칙에 반해 행동하도록 이끄는 본성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규정하여 그 목적을 세우라는 명령을 세운다면 바로 그 명령에 덕의무가 기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덕론』의 서문은 어떻게 덕 의무일 수 있는 목적이 가능한지(MS VI: 382)를 다룬다. 덕의무라는 개념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측면에서 『덕론』의 서문 전체는 덕의무 개념에 대한 “연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³⁾. 덕의무라는 개념의 객관적 타당성을 증명하기

3) 일반적으로 “연역”은 추론규칙에 따라 보편적인 명제들에서 특수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칸트에게 “연역”은 기본적으로 권리 증명을 뜻하는 법률 용어를 의미하며(KrV A84= B116), 경험적 증거에 문의하여 해당 사태가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요구된다(KrV A85=B117) 이 경우 정당화는 해당 사태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범주는 선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방식으로는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 범주를 경험대상에 적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순수이성비판』에서는 이 순수지성개념이 대상인식과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전제(인간은 사고 및 경험에서 자기 자신을 언제나 단일한 주체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임을 밝혔다.

위해 칸트는 우선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란 개념을 생각할 타당한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덕론』의 서론에는 덕의무란 개념의 “연역”을 위한 네 개의 논증(MS VI: 381, 385, 388, 395)이 있다.

논증방식의 측면에서 네 논증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 우선 각 논증들은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다른 것으로 소급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논증에서 증명하고자 한 테제(“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있다)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음의 논란 없는 가정이 더 이상 뒷받침될 수 없음을 보인다. 각 논증들은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만약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없다면, 정언명령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보편타당한 책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그런데 정언명령과 보편타당한 책무라는 개념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가져야만 하는 목적”은 있어야만 한다.

“가져야만 하는 목적”을 윤리학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하는 첫 번째 논증은 다음과 같다.

법이론은 한낱 [...] 외적 자유의 형식적 조건, 다시 말해 법만을 다루었다. 반면에 윤리학은 질료 (즉 자유로운 의사의 대상), 즉 동시에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목적으로서, 다시 말해 인간에게 의무로 표상되는, 순수이성의 목적을 제시한다. - 왜냐하면 감성적 경향성들은 의무에 어긋날 수 있는 [...] 목적들로 유혹하므로, 법칙수립적인 이성은 그것들의 영향력을 다름 아니라 그에 맞서는, 다시 말해 경향성에 독립해서 선험적으로 주어져야만 하는 도덕적 목적을 통해 다시금 제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MS VI: 381)

칸트에 따르면 법론은 외적인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을 규제하는 원리를, 덕론은 내적인 법칙수립을 이끄는 원리를 다룬다. 위 인용문의 세 번째 문장은 보편법칙적 형식을 가지는 준칙이란 기준이 인간에게는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데 충분할 수 없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감성적 본성 때문에 의무에 거슬러서 감성적 목적을 추구하도록

쉬이 이끌리기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감성적 본성이 지정한 목적에 맞서는 목적, 순수하게 법칙수립적 이성이 지정해주는 목적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인간이 감성적 자질에 독립된 목적을 세울 수 있다면, 이 목적은 의무에 반해 행동하도록 이끄는 목적들에 맞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제시된 칸트의 논증은 순수하게 법칙수립적인 이성이 있고, 이 이성이 근거하는 원리가 실제로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만약 이 가정이 의심스러운 것이라면 논증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 최소한 칸트의 윤리학에서 이 가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법칙수립적 이성과 그 이성이 따르는 원리의 실재성은 이미 『실천이성비판』에서 “이성의 사실”이라는 테제에 의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KpV V: 31, 43, 47)⁴⁾. 하지만 위의 논증은 얼핏 보기에 칸트 윤리학의 기본 생각, 순수실천이성이 그 자체로 의지를 결정하는데 충분하다는 생각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위의 논증은 순수실천이성이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를 결정하는 데 충분치 못해 다른 도움책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들린다.

칸트 윤리학의 기본 생각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위의 논증은 그저 일인칭의 관점에서 행위의 의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할

4) “이성의 사실”이 최초로 도입되는 구절은 아래와 같다.

“이 근본법칙에 대한 의식을 우리는 이성의 사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근본법칙을 이성의 선행하는 자료로부터 [...] 추론적으로 도출 herausvernünfteln해낼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그 자체로서, 순수하든 경험적이든 어떠한 직관에도 의거하는 바 없는 선행적 종합명제로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이 법칙을 주어진 것으로 오해 없이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이 법칙을 통해 자신이 근원적으로 법칙수립적임을 [...] 고지하는, 순수이성의 유일한 사실임을 명심해야 한다”(KpV V: p. 31)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칸트의 “이성의 사실” 테제에 대해, 칸트가 도덕 법칙의 실재성을 증명하는 대신 그것의 실재성을 독단적으로 가정했다고 여겼다(Ameriks 2003: p.176, 254; Guyer 2007: p. 462). 칸트의 “이성의 사실” 테제를 근거지우고자 하는 설득력 있는 시도들로 Henrich (Henrich: 1974), O’Neil(O’Neil: 2002), Kleingeld(Kleingeld: 2010) 등의 연구가 있다.

것이다. 이성적 행위자는 자기 행동이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자기의 의지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의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목적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한한 이성적 행위자 즉 인간은 이성뿐만 아니라 경향성도 가지고 있어서, 의무의 수행이 문제될 때 도덕법칙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성의 목적”을 따르고픈 욕구를 느낀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가져야만 하는 목적”은 인간이라는 유한한 이성적 행위자가 자신의 도덕적 의지를 행사하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이 논증은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윤리학에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그저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보다 더 적극적인 근거는 『덕론』서문의 세번째 항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가져야만 하는 목적]과 그러한 목적에 대응하는 정언명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 자유로운 행위들이 있으므로, 그 행위들이 지향하는 대상으로서의 목적들도 있을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이런 목적들 가운데는 동시에 (다시 말해 그것의 개념상) 의무인 목적들이 몇몇 있음이 틀림없다. -- (3) 왜냐하면 만약 그와 같은 목적이 없다면, 어떤 행위도 목적 없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실천이성을 위한 모든 목적들은 언제나 단지 다른 목적들을 위한 수단으로 유효할 터이고 (4) 정언 명령이란 불가능할 터이기 때문이다. (MS VI: 385, 번호는 필자)

얼핏 보기에 위의 논증은 그리 설득력을 갖는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자유로운 행동들이 어떤 목적을 가진다는 논란의 여지없는 전제인 명제 (1)로부터, 어떤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목적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명제 (2)가 필연적으로 도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⁵⁾. 그런데 주의

5) 이러한 이유로 포터N. Potter는 이 논증이 문제적이라고 진단하고 위의 논증이 “의무로부터” 일어난 행위에 국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otter 1985). 포터의 재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무로부터” 일어난 행동도 일단 행동인 이상 어떤 목적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이 행동은 순수이성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의 목적 또한 순수이성에 의해 주어어야만 하며 이 목

할 것은, 위의 논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명제 (3)과 명제 (4)라는 점이다. 명제 (3)과 (4)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그 개념상 가져야만 하는 목적인 것이 없다면, 그리고 만약 모든 목적들이 그저 다른 목적들의 수단으로만 작용한다면, 정언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가져야만 하는 목적”은 정언명령의 사고 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 간주된다. 이 논증에 담겨 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만약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의지를 생각할 수 있으려면, “가져야만 하는 목적” 혹은 덕의무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논증은 실천이성의 역할이 기술적-실천적인 숙고로 완벽하게 환원될 수 없다는 가정을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만약 실천이성이 그저 목적-수단의 관계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결과 숙고의 내용이 자연인 과학-경험적으로 결정되는 요소들로 완벽하게 환원될 수 있다면 순수 실천이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정언명령도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엘리슨 H.E.Allison에 따르면 위의 논증은 정언명령의 근거를 이루는 어떤 무조건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증명하지만, 칸트가 덕의무라 밝힌 자기 자신의 완전성이나 타인의 행복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뒷받침하지 못한다(참고 Allison 1996). 엘리슨의 비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의 논증을 보다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은 위의 논증이 그 자체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다른 논증에 뒤이어 제시된 논증이라는 사실이다. 위의 논증이 제시되기 이전 문단에서는 목적을 세우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룬다. 그 이전 문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은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근거에서, 만약 “의무로부터” 일어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는 “동시에 의무인 목적”을 포함한다(Potter 1985: p. 81). 그러나 해당 텍스트는 그저 엄격한 의미에서 도덕적인 행동에서 목적을 세우는 일 뿐만 아니라, 목적을 세우는 일 일반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포터의 해석은 뒷받침될 수 없다.

모든 행위는 각기 목적을 가지며 누구도 자신의 의사Willkür의 대상을 스스로 목적으로 삼지 않고선 어떠한 목적도 가질 수 없으므로, 어떤 행위의 목적을 가지는 것은 행위하는 주체의 자유의 활동Akt der Freiheit이지, 자연의 작용결과Wirkung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의 목적을 규정하는 이 활동은 수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적으로가 아니라) 목적 자체를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지시명령하는 실천원리이므로, 그것은 순수실천이성의 정언명령, 다시 말해 의무 개념을 목적 일반의 개념과 결합시키는 그런 명령이다. (MS VI: 385, 강조는 인용자)

여기서 칸트는 목적 수립 일반에 대해 설명한 뒤, 목적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그 조건이 “의무 개념을 목적 일반의 개념과 결합시키는 [...] 명령”임을 밝힌다. 논증에서 핵심적인 논거들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의사Willkür 혹은 실천이성이 목적을 수립하는 능력이라는 칸트의 생각이다. 위 논증의 핵심 단계는 위의 인용문에서 강조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강조된 부분에 함축된 생각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자유로운 목적 수립은 정언명령이라는 특수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정언명령이 도덕적인 행위의 경우뿐만 아니라 도덕적이지 않거나 도덕과 무관한 행동에서도 목적을 세우는 활동을 근거지우는가? 예를 들어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경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실현시킨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그의 준칙은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데 효과적인 수단을 택하길 요구하는 가언명령에 근거한 것일 터이고, 이 때 문제되는 실천이성은 순수한 실천이성이 아니라 도구적인 실천이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서도 행위자의 목적을 수립하는 행위는 정언명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기서 칸트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인용문의 강조된 부분에서는 목적을 실현하는 일이 아니라 목적을 세우는 일 자체가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향성을 충족시키는 행동에서 목적을 실현하는 일은 물론 가언명령에 기반한 준칙에 따라 일어난다. 그

러나 행위자가 경향성을 충족시키는 일이 충분한 이유를 가지는 행동임을 인정하고 그 경향성을 충족시키는 것을 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때, 목적을 세우는 일은 궁극적으로 그의 목적 수립 능력에 근거한다. 그리고 칸트에 따르면 자유롭게 목적을 세우는 일, 어떤 목적에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그 목적을 따르도록 동기화되는 일은 이성적 행위자가 “목적 자체인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목적 자체인 인간성”에 근거한 정언명령이 바로 “목적 자체인 인간성의 정식”이다.

바꿔 표현하면, 이성적 행위자의 자유로운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즉각적인 충동이나 경향성은 행위자를 행위하도록 하는 동기로 작동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자가 단 것을 먹으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 경향성은 그에게 어떤 목적(예: 케이크 먹기)을 제시한다. 그는 이성적 규범에 비춰 이 목적이 실현할만한 것인지 따져본 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따를 준칙을 세울 것이다. 이 경우 행위자가 가지고 있던, 단 것을 먹고 싶은 심적인 상태는 그 자체로 케이크를 먹는 행동의 충분한 근거가 아니다. 행위자가 특정 상황에서 케이크를 먹는 것을 허용하는 준칙을 세울 수 있을 때, 그의 단 것을 먹으려는 경향성이 케이크를 먹는 행동의 근거가 된다. 요약하면 이성적 행위자에게 욕구나 경향성은 그 자체로는 행동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것들을 충족하는 것에 근거를 주는 규칙을 세울 수 있을 때만 행위의 이유가 된다. 그런데 어떤 행위의 규칙을 세우는 행위는 예지적인 것이자 행위자의 순수한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다. 바로 이 생각이 위의 인용문에서 표현된, 모든 목적 수립이 정언명령이라는 원리에 근거한 “자유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아이디어가 “덕론의 최상의 원리”를 형식화하고 증명하는 부분(MS VI: 395)에서도 발견된다.

덕론의 최상의 원리는, 그러한 목적을 갖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보편적인 법칙일 수 있는 목적들의 준칙들에 따라 행위하라는 것이다. [...] 덕이론의 이 원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으로서 어떠한 증명도 허용하

지 않지만, 그러나 순수실천이성으로부터의 연역은 허용한다. -- 인간의 자기 자신과 타인들의 관계에서 목적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순수실천이성을 위한 목적이다. 왜냐하면 순수실천이성은 목적들 일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적들에 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목적들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심도 갖지 않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순수이성은 (항상 하나의 목적을 포함하는) 행위들을 위한 준칙들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실천이성이 아닐 것이다.(MS VI: 395, 강조는 원문)

인용문의 가운데맺줄 이하에서는 “덕론의 최상의 원리”에 대한 “연역”이 제시되고 있다. 이성적 행위자에게 덕론의 최상원리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칸트는 이성적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에서 순수 실천이성의 사용을 근거지우는 목적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 밑줄 친 문장에서는 “인간의 자기 자신과 타인들의 관계에서 목적일 수 있는 것”과 “순수이성을 위한 목적인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칸트 자신에 의해 “목적일 수 있는 것”과 “목적인 것”이란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 “목적일 수 있는 것”이란 표현은, 문제가 되는 사태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실제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지 않음을 드러낸다. 그 결과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적 본성에 의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목적”인 “행복”이 제외된다 (MS VI:385; GMS IV: 428). 또한 “목적일 수 있는 것”을 논하며 칸트는 인간의 자신과 다른 인간과 맺는 관계“를 문제삼고, 인간이 사물들과 맺는 관계나 사물과 사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이제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인간의 자기 자신과 타인들의 관계에서 목적일 수 있는 것”을 해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목적은 오직 인간만이 세울 수 있는 것이며 인간들이 실제로 자신의 본성에 의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문제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목적은 다음 아닌 “목적 자체인 인간성” 즉 인간이 가진 “목적 수립의 능력”이다.

이제 인용문의 밑줄 친 문장은, 이성적 행위자의 목적 수립 능력이 순수실천이성의 목적이라고 바꿔 쓸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순수한 실천이성을 가진 존재자와 인간이라는 유한한 실천이성을 가진 존재자를 대비시키면, 위의 밑줄 친 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순수한 실천이성을 가진 존재자에게 목적 수립 능력으로서의 “목적 자체인 인간성”은 그 존재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목적이지만, 유한한 실천이성을 가진 존재자인 인간의 경우에 “목적 자체인 인간성”은 그 존재자가 순수한 실천이성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에서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다. “덕론의 최상 원리”에 따를 때 행위자는 자기 준칙에 표현된 목적이 보편화가 가능한 것인지를 테스트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덕론의 최상 원리”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수립해야만 하는지 알려준다. 소극적으로 표현할 경우 덕론의 최상원리는, 내 준칙에 표현된 목적이 보편화가 가능한지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해석을 토대로 글을 열면서 제기했던 질문 가운데 하나인, “가져야만 하는 목적” 혹은 “보편화가 가능한 목적”에 대한 고려가 도덕법칙의 형식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해 대답할 수 있다. 덕론의 최상원리는 이성적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 수립 능력을 발휘할 때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하는 일반적인 조건들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가져야만 하는 목적”은 다른 구체적인 행위 목적들보다 상위의 차원에 위치한다. 다시 말해 행위의 구체적인 목적들은 “가져야만 하는 목적”에 포섭되어야만 한다.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기 전에, “동시에 의무인 목적” 즉 덕 의무가 윤리학에 도입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칸트의 논증을 하나 더 검토하겠다. 이 논증은 이전에 검토한 논증들과는 다른 지위를 가지나 연구자들에게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이 논증은 『덕론』의 서론의 제 6절에 위치하며, 여기서 칸트는 윤리학의 독특성을 설명하면서 윤리학은 행위자 자신의 의지가 문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덕론과 법론의 최상원리를 모두 포괄하는 “윤리의 최상원리”(MS VI: 225, 389)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준칙이 보편법칙의 형식을 가지는지 만을 문제 삼

는다. 이 때 문제되는 의지는 의지 일반일 뿐인데, 덕론의 최상원리는 행위자 “자신의 의지”를 문제 삼는다(MS VI: 389).

“윤리학에서는 이것[-]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이 너 자신의 의지의 법칙으로 생각되는 것이지, 의지 일반 즉 타인의 의지일 수도 있을 터인 의지 일반의 법칙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다.” (MS VI: 389)

덕론의 최상원리가 개별 행위자에게 “의지 일반”을 위한 법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를 위한 법칙으로 생각된다는 칸트의 주장은 덕 의무가 행위자의 자기 구성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이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한 행위자는 무조건적인 목적, “가져야만 하는 목적”을 수립할 수 있을 때에야 진정한 의미에서 주체 혹은 자기 자신일 수 있다⁶⁾. 만약 내가 그 자체로 목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인 목적을 세운다면, 이 목적을 세울 때 나는 엄격한 의미에서 내 의지에 의해서만 목적을 세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내가 기술적-실천적인(technisch-praktisch) 목적-수단 관계로 포섭가능한 목적 혹은 자연의 인과법칙적 연쇄 하에

6) 이와 유사한 생각을 『정초』의 제3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오직 현상을 통해, 자신의 의식이 촉발되는 바대로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드시 이 순전히 현상들로부터 합성된 그 자신의 주관적인 성질을 넘어서서 그것의 근거에 놓여 있는 어떤 것, 그의 자아를 상정해야만”(GMS IV:451) 한다. 이 맥락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성적 행위자는 자신의 예지적인 측면에 근거해서 자신을 “진정한 자신das eigentliche Selbst (GMS IV: 452, 457, 458, 461)” 간주한다는 칸트의 생각이다. 이성적 행위자는 경향성이나 욕구를 따를 때가 아니라 이성의 법칙에 따를 때 자기 자신을 진정한 자신이라고 여긴다는 칸트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행위자의 행동이 완벽하게 자연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는 자신의 움직임을 “행동”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는 자신을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장소로 파악할 수 있을 뿐, “행위자”라고 파악할 수 없다. 그 결과 그는 현상세계의 자연법칙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어떤 것, 궁극적으로는 “대상관련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것을 진짜 자신이라고 파악한다.

있는 어떤 목적을 세울 때, 이 목적은 엄격한 의미에서 “주관에 속한” 목적이 아니라 “객관에 속한” 목적이다. 하지만 주체가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목적, 어떠한 기술적·실천적인 목적·수단의 관계로도 환원될 수 없으며 인과적으로 결정된 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목적을 세운다면, 이 목적은 “주체 자신”의 것이자 엄격한 의미에서 객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인 것이다.

덕론의 『서문』 6절에 위치한 이 논증에서 뢰프G. Römpf는 “주체의 주관성”이 발현되는 칸트식의 모델을 도출했다. 뢰프에 따르면 칸트에서 “주관의 주관성”은 두 가지 의미에서 실천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Römpf 2006: p. 180). 첫째로 주관의 주관성은 자유로운 목적 수립 능력의 발휘를 통해 “사물을 통제하는 인과법칙에 의해 결정된 목적·수단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의미에서 실천적이다. 그리고 주관의 주관성은 “가져야만 하는 목적”을 세우는 능력에 의해서 자신의 엄격한 의미의 자유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실천적이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 주관의 주관성은 목적 수립 능력의 발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일종의 성과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적을 세우는 능력은 주체가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을 뜻하며, 목적 수립 능력을 통해 주체는 특수한 권리와 의무들을 가진 존재로 자기 자신을 정립한다.

3. 덕의무와 이성적 행위자의 목적수립 능력의 관계

이제까지의 논증을 바탕으로, 왜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칸트 윤리학에 도입되어야 하는 것인지 대답할 수 있다. 도덕은 누구나 예외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위를 명령한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의 목적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행위자들이 반드시 세우고 (내키지 않더라도) 따라야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목적을 세우는 일은 근본적으로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강제될 수 없다 (강제될 경우 행위의 목적을 세운다는 표현을 쓸 수 없다). 그렇다면 도덕에서 문제삼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목적은 인간에게는

그가 이미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야만 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에게는 그렇게 해야 하는 필연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인간성” 혹은 “목적 수립의 능력”을 뜻하는 이 “가져야만 하는 목적”은 개별 인간이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자유를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윤리학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가져야만 하는 목적”은 이후 인간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 및 타인과의 관계라는 두 측면을 토대로 “자기 자신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으로 상술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으나, 왜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이 두 가지로 제시되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자기 자신의 완전성을 추구하라”는 의무는 이성적 행위자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목적 수립 능력(혹은 “인간성”)을 촉진해야 함을 표현한 의무이다. 반면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라”는 의무는 이성적 행위자가 다른 개별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행위자의 목적 수립 능력(혹은 “인간성”)을 촉진해야 함을 표현한 의무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덕 의무 혹은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칸트의 윤리학에 도입되어야 한 까닭을 행위자 자신의 관점과 관찰자의 관점에서 정리하겠다. “가져야만 하는 목적”은 행위자가 목적 수립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기본 조건들을 표현하고, “가져야만 하는 목적”을 따름으로써 행위자는 자신의 자유를 발휘하며 자기 자신의 동일성을 구성해 갈 수 있다. 관찰자의 관점에서, “가져야만 하는 목적”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칸트의 윤리학에 상호주관적인 차원을 마련해 준다.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라는 덕 의무는 다른 사람의 목적 수립 능력을 존중함으로써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주관들의 상호주관적 관계망을 열어준다. 한편 행위자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가져야만 하는 목적”에 대해 고려함으로써 도덕법칙에 맞게 자신의 의지를 결정하는 힘을 강화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1. 칸트 원전

GMS: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국역본: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정초』, 아카넷, 2005)

KpV: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국역본: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03).

MS: Metaphysik der Sitten (국역본: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012).

2. 이차문헌

백종현, “『덕이론』해제”, 수록: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012, pp.397~422.

Allison, Henry E. Idealism and Freedom. Essays on Kants theoretical and practic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otter, N.: “Kant on ends that are at the same time duties”, 수록: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66, 1985, pp. 78-92.

Römpp, G.: Kants Kritik der reinen Freiheit. Eine Erörterung der Metaphysik der Sitten, Berlin: Duncker&Humbolt, 2006.